

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3. 11.(금)
담당 부서 <총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02-2100-2695)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3.11.) 조치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①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

-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②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③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 아울러,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④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됩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①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②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참고) FAQ

담당 부서 <총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02-2100-2695)
<공동>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책임자	국 장 박형준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유형주 (02-3145-7710)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22.3.11.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주)셀트리온</b></p> <p>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020.12.31.</p> <p>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생물학적 제제 제 조 업</p>	<p><b>【회사】</b></p> <p>① 개발비 과대계상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p> <p>- 회사는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②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p> <p>-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③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16년 연결 13,000백만원)</p> <p>- 회사는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④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09년 개별 17,503백만원, '10년 개별 39,002백만원, '11년 연결·별도 63,154백만원, '12년 연결·별도 66,368백만원, '13년 연결·별도 69,191백만원, '14년 별도 69,306백만원, 연결 90,295백만원,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p> <p>-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b>회 사 :</b></p> <p>- 과징금</p> <p>※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p> <p>- 감사인지정 2년</p> <p>- 내부통제 개선권고</p> <p>- 시정요구</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셀트리온</p>	<p><b>【감사인 및 공인회계사】</b></p> <p>①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는 회사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계상 하였음에도,</li> <li>- 개발비 인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②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li> <li>-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③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연결 13,0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는 회사가 판매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li> <li>-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④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는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b>한영회계법인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li>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li> <li>-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8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4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4시간</li> </ul>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셀트리온헬스케어</p> <p>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p> <p>코스닥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기타 전문 도매업</p>	<p><b>【회사】</b></p> <p>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148,267백만원, '18년 161,347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②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14년 개별 2,151백만원, '15년 별도 28,923백만원, 연결 30,246백만원, '16년 별도 18,921백만원, 연결 34,073백만원) - 회사는 해외유통사에 사후정산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유통사의 최종 판매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회계연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③ 자회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13년 개별 113,601백만원, '14년 개별 89,635백만원, '15년 별도 △2,016백만원) - 회사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④ 해외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0년 개별 84,287백만원, '11~13년 개별 29,234백만원, '14년 개별 29,934백만원, '15년 연결·별도 29,379백만원, '16년 연결·별도 17,733백만원, '17년 연결·별도 △12,712백만원, '18년 연결·별도 △4,257백만원) - 회사는 해외유통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⑤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 ('18년 연결·별도 21,852백만원) - 회사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p> <p>⑥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17.6.7.)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b>회 사 :</b></p> <p>- 과징금</p> <p>※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p> <p>- 감사인지정 3년</p> <p>- 담당임원해임권고</p> <p>- 내부통제 개선권고</p> <p>- 시정요구</p> <p>※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셀트리온헬스케어	<p><b>【감사인 및 공인회계사】</b></p> <p>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연결·별도 113,379백만원, ’17년 연결·별도 148,26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li> <li>-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②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17.6.7.)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등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음</li> </ul>	<p><b>삼정회계법인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li>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4시간</li> </ul>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주)셀트리온헬스케어	<p><b>【감사인 및 공인회계사】</b></p> <p>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8년 연결·별도 161,34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li> <li>-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② 국내 판매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8년 연결·별도 21,85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은 회사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li> <li>- 관련 회계기준서 및 거래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li> </ul>	<p><b>한영회계법인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li>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li>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8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셀트리온제약</p> <p>결산기 :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p> <p>코스닥시장 상장법인</p> <p>업종 : 완제 의약품 제조업</p>	<p><b>【회사】</b></p> <p>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16년 연결·별도 13,000백만원)</p> <p>- 회사는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17년 연결·별도 13,000백만원)</p> <p>-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 교환 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③ 개발비 과대계상 (’12년 별도 7,809백만원, 연결 6,969백만원, '13년 별도 12,845백만원, 연결 11,564백만원, '14년 별도 23,756백만원, 연결 21,979백만원, '15년 별도 45,697백만원, 연결 43,920백만원, '16년 별도 56,492백만원, 연결 54,942백만원, '17년 별도 50,971백만원, 연결 49,350백만원)</p> <p>-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p>	<p><b>회 사 :</b></p> <p>- 과징금</p> <p>※ 회사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p> <p>- 감사인지정 2년</p> <p>- 내부통제 개선권고</p> <p>- 시정요구</p>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 1. 금번 조치로 인하여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나?

-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음
  -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됨
  - 금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게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음

### 2. 감리가 장기간 소요된 이유는?

-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sup>1)</sup>,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sup>2)</sup>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음
    - 1) 유효기간 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밸리데이션 수행방법, EMA·FDA 등 해외보건당국의 허가·제품관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필요
    - 2)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재고자산 거래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각각의 계약서 및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3. 삼정, 한영 외 4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내용은 왜 없나?

- 외부감사규정 제38조에 따라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경우 공개하지 않음